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저공해자동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되, 긴급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II. 검토의견

안 제29조의2제7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입법 제1) 등을 고려할 때 저공해운행지역의 위치, 지정일시, 지정·

1)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생략)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관리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1.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만, 다른 법령에서 출입, 주차,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

변경·해제 사유 등은 지역 주민 등에게 알릴 중요 사항이므로 공보에 고시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요건과 지정·변경·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보에 고시할 사항 및 방법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부수적 사무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29조의2(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u> ,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때에는 <u>저공해운행지역의 위치, 지정일시, 지정·변경·해제 사유,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u> ,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요건과 지정·변경·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요건과 지정·변경·해제 절차, <u>공보 고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는 지역은 제외한다.

③·④ (생략)

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지정·변경·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⑩ (생략)

Ⅲ. 환경부 의견

안 제29조의2에서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저공해지역으로 지정하여 저공해자동차 등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부는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등이 도로 또는 교통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경찰청과 협의하고 유사입법 제2)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개 정 안	환경부 수정의견(안)
제29조의2(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을 변경·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의2(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저공해운행지역을 변경·해제하려는 경우에는 <u>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u>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려면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정계획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의 위치·면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정계획을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⑤~⑦ (생략)

(전문위원 이 화 실)